

무급전임자 임금지급세칙

2011년 12월 23일 제정 2016년 1월 29일 개정 2017년 1월 18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개정

현 행 안	개 정 안
<p>제 1 장 총칙</p> <p>제1조 (명칭)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 (이하 '지회')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세칙이라 칭한다.</p> <p>제2조 (목적) 본 세칙은 규칙 제50조(신분보장)에 의거 무급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 하기 위함이다.</p> <p>제3조 (지급대상) 1. 지회장이 추천한 자 (단, 집행위원회에 한함) 2. 조합 및 상급단체에 피임, 피선된 자</p> <p>제4조 (심의기구) 1. 지회장이 추천한자는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. 2. 조합 및 상급단체 피임, 피선된 자는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.</p> <p>제5조 (지급시기 및 기간) 1. 본 세칙 제3조(지급대상)의 발생일로 부터 계산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간은 사유가 소멸 된 날까지로 한다. 2. 급여지급 방법은 매월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급여통장으로 입금 한다</p> <p>제6조 (기금의 설치와 운용) 무급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재원은 조합비2로 운영한다.</p>	

현 행 안	개 정 안
제7조 (지급기준 및 방법) <p>1. 기본급은 조합원과 동일한 호봉표를 적용하며 호봉승급분 및 기본급인상분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지급한다.</p> <p>2. 무급전임자에게 매달 통상임금 + <u>OT52hr</u> 지급한다.</p> <p>3.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.</p> <p>4. 집행위원 3명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.</p> <p>5. 조합 및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은 1명 분에 대하여 지급한다.</p> <p>6. 5항 복수의 인원에 대해서는 1명 분의 임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. (단, 기 파견자의 임금은 인정한다.)</p>	<p>2. 무급전임자에게 매달 통상임금 + <u>OT25hr</u> 지급한다.</p>
제8조 (급여정산 및 소급) <p>매월 급여 정산 후 소급분 발생시 익월급여에 반영한다.</p>	
제9조 (결근 및 휴직시 급여) <p>결근 및 휴직시 단협과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원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</p>	
제10조 (징계시 급여) <p>1 조합 규약에 의거 징계 확정시 해당자는 해당 기간만큼 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.</p> <p>2. 주휴.년.월차.상여금 등의 차감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</p>	
제11조 (년, 월차) <p>무급전임 기간은 조합원 기준으로 년, 월차 수당을 지급한다.</p>	
제12조 (법적관계) <p>본 지회의 조합비2기금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.</p>	

현 행 안	개 정 안
부 칙	
<p><u>제13조 (제정 및 개정)</u></p> <p>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총회 (대의원회의)에서 결의한다.</p>	<p><u>제13조 (시행)</u></p> <p>이 세칙은 <u>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</p>
<p><u>제14조 (통상관례)</u></p> <p>세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</p>	<p><u>제14조 (제정 및 개정)</u></p> <p>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의 결의는 총회 (대의원회의)에서 결의한다.</p>
<p><u>제15조 (시행)</u></p> <p>이 세칙은 <u>제정된 날로부터 적용한다.</u></p>	<p><u>제15조 (통상관례)</u></p> <p>세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.</p>